

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

1. 의약품
2. 한약재
3. 야생동물 관련 제품
4.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
5. 건강기능식품
6.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
7. 식품류 · 주류 · 담배류
8. 화장품(기능성화장품, 태반함유화장품,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)
9.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
- ✓ 10. 통관목록 중 품명 · 규격 · 수량 · 가격 · 물품수신인 성명 ·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· 거래코드 · 공급망 정보 · 물품수신인 주소 ·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
- ✓ 11.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
12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

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(제77조의7제1항 관련)

1.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

| 면제대상 기자재 | 면제 수량 | 면제 내용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, 제품의 품질·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| 10대 | 법 제58조의2 제2항·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|
| 나.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| 1,500대(다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) | 법 제58조의2 제2항·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|
| 다.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| |
| 라.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| |
| 마.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| 3대 | |
| 바.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| |
| 사.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·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| |
| 아.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| |
| 자.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| 1대 | |
| 차. 그 밖에 전과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| |

2.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

| 면제대상 기자재 | 면제 수량 | 면제 내용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| 제한 없음 | 법 제58조의2 제2항·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|
| 나.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| |
| 다.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| |
| 라.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| |

3.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

| 면제대상 기자재 | 면제 수량 | 면제 내용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가.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,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| 제한 없음 | 법 제58조의2 제2항·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|
| 나.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,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 부 같은 기자재 |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| 잠정인증 받은 때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경우,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대한 시험 |

4.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

| 면제대상 기자재 | 면제 수량 | 면제 내용 |
|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 하는 기자재로서 판매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및 이 영 | 제한 없음 | 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|

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
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
기자재

| | |
|--|--|
| | |
|--|--|

전파법시행령 [대통령령 제32509호, 2022-02-28]

제77조의2(적합인증)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(이하 "적합인증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(이하 "방송통신기자재등"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
 2.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
 3.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
-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,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,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7. 7. 26.>